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12.0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## 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통지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합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.88억원(구입자금), 3.37억원(전월세자금)</u></p>	<p>자산기준 초과시 사후재판 강화 내용 반영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.[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 도시기금포털(<a href="http://nhuf.molit.go.kr">http://nhuf.molit.go.kr</a>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]</p> <p>1. 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.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<u>1천만원 이내</u>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<u>0.2%p 가산</u>하며, <u>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3.0%p 가산</u>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.37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<u>1천만원 이내</u>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<u>0.1%p 가산</u>하며, <u>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.0%p 가산</u>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	<p><u>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</p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hr/> <p>1. 구입자금대출 :</p> <hr/> <hr/> <hr/> <p><u>1천만원이내</u></p> <p><u>0.2%p가산—————1천만원초과—————</u></p> <p><u>3.0%p 가산, 5천만원 초과인 경우</u></p> <p><u>5.0%p 가산, 1억원 초과인 경우 5.0%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2. 전(월)세자금대출 :</p> <hr/> <hr/> <hr/> <p><u>1천만원이내</u></p> <p><u>0.1%p가산—————1천만원 초과—————</u></p> <p><u>2.0%p가산, 5천만원 초과인 경우 4.0%p 가산, 1억원 초과인 경우 4.0%p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기로 합니다.</u></p>	<p>순자산기준 초과구간 강조 표시 및 패널티 부분 자필서명</p>

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</p> <p>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 이용 중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세 사기특별법”) 제2조제5호의 전세사기피해 주택(이하 “전세사기피해주택”)의 임차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<u>&lt;신 설&gt;</u>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</p> <p>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회수금액 전액으로 _____ _____하며, 회수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본 대출금 상환에 사용 하기로 합니다.</p>	문구정비
<p>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<u>전세자금대출을</u>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	<p>② _____ _____ _____전세자금대출 또는 본 대출 _____</p>	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